

제260회 임시회
2007. 5. 14(월)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연기봉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4월 9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단체 포함)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나.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감면 조례 운영 목적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내용 보완(안 제1조)

○ 감면 근거 범조항 추가 및 감면 목적의 명확화

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9조)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단체 포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만 감면대상

다.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신설, 제30조의2)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제

라. 감면결정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32조)

-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별도의 통지 서식이 없던 것을 새로이 마련하여 사용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던 도세 감면규정을 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출연기관의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도세 감면대상 출자·출연기관의 현황과 예상되는 도세 감면액 규모,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